

회계 규정

제정 2011. 9.19.

개정 2020. 9.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공정·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24.>

제2조(적용범위) ① 협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정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2020. 9.24.>

제3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24.]

제4조(일반원칙) ①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신설 2020. 9.24.>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24.>
2. 모든 회계정보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증빙으로 하고 전표에 의한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9.24.>
3.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4. 회계처리과정에서 2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회계구분) ① 협회의 회계는 협회정관 제2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부문을 “공익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고, 그 이외 기타의 사업부문을 “기타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 9.24.>

② “공익목적사업” 회계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비수익사업’ 부문과 ‘공익-수익사업’ 부문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신설 2020. 9.24.>

③ 1항의 회계구분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목적 및 종류별로 ‘회계단위’를 세분

화하여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20. 9.24.>

제6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 회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24.]

제7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및 보관)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가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과 예금잔고증명을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24.]

제8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써 협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회계 관계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24.]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협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24.]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0조(전표)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산화에 따른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장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응장표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전표의 서식) ① 전표는 대체전표를 작성한다. <개정 2020. 9.24.>

② 필요한 경우 전표의 기능이 포함된 대응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년도 개시 이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0. 9.24.]

제13조(전표의 기준)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체전표에는 상대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금액의 정정 및 취소) ① 전표의 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정정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입금 및 출금을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전표의 작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 감액표시 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기록으로 부기표시 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며, 주요부는 총계정원장과 분개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과 명세장으로 한다.

제16조(장부의 기재원칙) 분개장과 보조부의 계정과목 및 적요와 금액은 전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7조(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하며, 약품 등으로 수정할 수 없다.

② 오기로 공란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전산에 의한 회계기록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으며, 차후의 정정은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 및 총계정원장과 각 보조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2.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3. 거래가 종결되는 계정은 종결 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제19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 연도별로 결산확정 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20조(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 한다.

②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할 경우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증빙은 일련번호에 의하여 회계전표와 유기적 연결이 되어야 한다.

제21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 경비내역서 <개정 2020. 9.24.>

가. 지출 경비내역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24.>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사업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가지금액 및 개산금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별지 영수증서에 기명날인 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 또는 우편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을 대신한 경우에는 입금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접대성경비는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으로 한다.

라. 해외 등 특별한 지역에서의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간이계산서로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금전회계

제22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어음과 유가증권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3조(금전출납의 방법) 금전의 출납은 반드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확인한 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② 금전출납담당자 이외의 자가 금전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담당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4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은 금고에 보관하고 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금전의 보관상황과 거래 잔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현금시재액은 항상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급이 유보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입금 조치 하여야 한다.

제25조(현금의 지급) ① 금전은 출금전표 또는 지출결의서에 책임자의 확인이 없으면 이를 지급할 수 없다.

②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직접 지급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지급을 대신하여야 한다.

제26조(전도금의 처리) ① 행사경비 등을 전도 지급하는 경우 전도금으로 처리하며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24.>

② 매월 말일 현재로 전도금 등의 개산지급액은 전도금명세 등을 작성하여 상위 자에 보고하고 정리방침을 상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24.>
[본조제목개정 2020. 9.24.]

제4장 재무회계 [장제목 변경·이동 2020. 9.24.]

제27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0. 9.24.>

1. 재무상태표 <신설 2020. 9.24.>
2. 운영성과표 <신설 2020. 9.24.>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주석 <신설 2020. 9.24.>

② 재무제표는 당해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재무제표 작성)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9.24.>

②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공익목적사업’ 과 ‘기타사업’ 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0. 9.24.>

③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배열은 별표 1과 같다.

④ 운영성과표 계정과목의 배열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제목개정 2020. 9.24.]

제29조(총액계산) ①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과 수익을 상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이들을 서로 상계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한다.

②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9.24.>

③ 비유동자산은 유동성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산으로 그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9.24.>

제31조(자산·부채) ①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③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협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액으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채권의 대손처리) ① 채권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권을 부득이하게 대손처리 하고자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유형자산의 권리보존) ①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유·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 자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건설 중인 자산 등 가치하락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24.]

제35조(감가상각의 방법)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개정 2020. 9.24.>

1. 정액법 <신설 2020. 9.24.>

2. 정률법 <신설 2020. 9.24.>

②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0. 9.24.>

③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0. 9.24.>

④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한다. <신설 2020. 9.24.>

⑤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잔존가액)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1,000원을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24.]

제37조(유형자산의 담보제공) ①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말소사항은 주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1년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를 말한다.

제39조(부채성충당금) 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것은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부채성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0조(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24.>

제41조(순자산의 분류)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 9.24.>

②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9.24.>

③ 기본순자산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개정 2020. 9.24.>

1. 정관상 기본재산 <신설 2020. 9.24.>

2. 사용이나 처분 시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자산 <신설 2020. 9.24.>

제42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계정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한다. <개정 2020. 9.24.>

제43조(회계간의 거래) ①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사업’ 회계와 ‘기타사업’ 회계 상호간의 거래 또는 제5조 2항에서 정하는 회계단위 상호간의 거래는 회계간의 거래계정으로 정리한다. <개정 2020. 9.24.>

② 제1항에서 말한 회계간의 거래계정은 회계단위간미수금, 회계단위간미지급금, 회계단위간전입금, 회계단위간전출금으로 한다. <신설 2020. 9.24.>

③ 각 회계부문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계간의 거래계정을 서로 상계하여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신설 2020. 9.24.>

[본조제목개정 2020. 9.24.]

제44조(수익과 비용의 인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개정 2020. 9.24.>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시고디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신설 2020. 9.24.>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0. 9.24.>

제45조(수익과 비용의 구분) 운영성과표는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이익(손실), 사업외 수익, 사업외 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법인세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법인세비용, 당기운영이익(손실)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20. 9.24.>

② 삭제<2020. 9.24.>

③ 삭제<2020. 9.24.>

제40조(법인세차감전순이익) [본조삭제 2020. 9.24.]

제46조(국고보조금 등) 대한체육회지원금, 주니어육성지원금, 체육공단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되 보조금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장 예산과 결산

제47조(예산) ① 예산은 협회의 발전과 주요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며 수입예산과 운영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예산은 전년도사업의 집행내용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8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항목간의 전용이 불가피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항목 내의 예비비는 사후보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협회는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체육공단지원적립예금, 주니어육성지원적립예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50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결산담당부서가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0. 9.24.>

③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매 회계연도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명백히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24.>

1. 재무상태표 <신설 2020. 9.24.>

2. 운영성과표 <신설 2020. 9.24.>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신설 2020. 9.24.>
4. 부속명세서 <신설 2020. 9.24.>

- ② 작성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 후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9.24.>
- ③ 제2항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24.>

제52조(결산정리) ①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② 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미경과비용, 미경과수입, 미지급비용, 미수수입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53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정리 후 각 계정원장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 ② 결산정리 후의 각 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개정 2020. 9.24.>

[본조제목개정 2020. 9.24.]

제54조(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0. 9.24.]

부 칙 <2011. 9.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1. 9.19.)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회계상으로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계정과목 및 해소[재무상태표]

계 정 과 목		해 소	
관	항 목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 금	통화와 타인발행의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우편환 등의 통화 대용증권
		보 통 예 금	은행 또는 체신관서와 보통예금 계약에 의하여 예입인출에 통장을 사용하는 요구불 예금
		체 육 공 단 지 원 적 립 예 금	기금으로 적립된 사용이 제한된 정기에금(대한체육회 질권설정)
		주 니 어 육 성 지 원 적 립 예 금	기금으로 적립된 사용이 제한된 정기에금(대한체육회 질권설정)
		정 기 예 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는 기한이 가입당시 시점에서 3개월 초과 및 1년 내에 도래하는 예금
		미 수 협 회 비	회원사 골프장의 협회비 미수금
		(대 손 충 당 금)	결산일 현재 미수협회비 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액
		미 수 수 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예금, 국공채,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 등이 포함됨)
		미 수	일반적인 사업 외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선 급	선지급한 금액
		선 급 비 용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화 되는 금액
		당 기 법 인 세 자 산	법인세법에 의한 금융자산 운용수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세액 및 중간예납세액
		부 가 세 대 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
	전 도	처리할 과목 및 금액의 미정 또는 절차미결의 일시적인 지급금	
재고자산	회 계 단 위 간 미 수	회 수	회수를 전제로 다른 회계단위에(또는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액
		도 서	골프규칙 보급사업을 목적으로 판매를 위해 제작된 도서발간물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 기 금 융 상 품	자금증식을 위한 정기에금, 정기적금 등(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금으로 가입당시 만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
		투 자 유 가 증 권	1. 매도가능증권 만기가 확정 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 2.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가입액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금액
	유형자산	토 지	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건 물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의 부속설비와 기타 순자산적 지출에 해당하는 가액을 가산한 금액
		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차 량	법인용차량 및 기타 육상운반구
		차 량 감 가 상 각 누 계 액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비 품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그 금액이 상당액 이상인 책상, 사무용 컴퓨터(노트북포함), 카메라, 경비용품 등

	비 품 감 가 상 각 누 계 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무형자산	소 프 트 웨 어	사무용 소프트웨어(한글, MS오피스) 및 협회용 프로그램개발
	산 업 재 산 권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저작권 등)
기타비유동자산	임 차 보 증 금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및 전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기 타 보 증 금	영업 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유동부채	미 지 급 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미 지 급 비 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비용
	선 수 수 익	이자, 수수료 등 당기의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
	선 수 금	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을 때 먼저 수령하는 금액
	예 수 금	직원 급여에서 공제된 예수금(원천세, 4대보험 등) 및 거래와 관련하여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
	단 기 차 입 금	결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변제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
	당 기 법 인 세 부 채	당기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부 가 세 예 수 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세액
	가 수 금	내용불명, 금액 미정의 일시적인 수입금에 대한 임시계정
	회 계 단 위 간 미 지 급 금	상황을 전제로 다른 회계단위가 대신 지급하거나 다른 회계단위로부터 일시적으로 수령한 금액
비유동부채	임 대 보 증 금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퇴 직 급여 총 당 부 채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법인이 납부한 부담금(퇴직급여총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을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
기본순자산	기 본 재 산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분류한 자산
보통순자산	적 립 금	미래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잉 여 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 이익 등이 포함

계정과목 및 해소[운영성과표]

계 정 과 목			해 소
관	항	목	
사업수익	회비수익		회원사 회비 납부금
	기부금수익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현금(또는 현물)로 기부받은 수익
	보조금수익		1.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2. 기금보조금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기금수입
	매출액	참가금수입	협회가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로부터 받는 수입
		대회운영수입	주최사 측으로부터 받는 대회운영수입
		임대수입	부동산(파주,여의도) 임대수입 및 관리비 수입
		출판수입	골프규칙관련 도서 판매수입
		기타매출액	대회공인료 및 선수등록비, 핸디캡발급비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수입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투자자산수익		기금적립예금 및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대회운영비	각종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국내개최 운영비 등
		강화훈련비	국가대표/상비군 국내훈련비 및 해외전지훈련비, 용품지원비, 선발전 운영비, 코치 및 선수수당 등 선수훈련과 관련된 비용
		해외파견사업비	국제대회 파견 체재비
		교육사업비	국제심판양성 및 골프아카데미 운영비, 골프체육지도사 운영비 등 고유목적의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용
		홍보사업비	대외 홍보활동비 및 홍보물제작비, 연차보고서, 골프지표조사 제작비 등 고유목적의 홍보와 관련된 비용
		기타사업비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총회 개최관련 부대비용, 골프규칙보급 및 핸디캡보급 사업비 등
		산하단체지원비	시도협회 및 산하연맹체 지원비
		포상금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외 각종 국제대회 입상선수 포상금
		장학금	각종 국내대회 우수선수 장학금
	도서매출원가	골프규칙관련 도서 제작원가	
	일반관리비용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및 건강검진료 등 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여비교통비	임직원 업무관련 교통비 및 각종 회의 시 내빈초청에 따른 여비 등
		세금과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및 부담금 등(재산세, 취득등록세 등)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
		보험료	고정자산 및 기타 설비의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화재보험, 도난보험 등)
		차량유지비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유비 및 수선비, 유지비 등 차량운행 관련 비용
		도서인쇄비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업무수행에 따른 각종 인쇄물 제작비 등
		경조사비	대외인사 및 관련단체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대외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회의비 및 관련 부대비용
통신비		사무실 전화사용료, TV 및 인터넷 사용료, 각종 우편물 발송료 등	

		소 모 품 비	사무용품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전산개발유지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회계프로그램 유지비, 각종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유지비 등
		지 급 수 수 료	각종 지문수수료(회계, 세무, 노무 등) 및 전문가활용비, 온라인 결제수수료 등
		연 맹 회 비	관련단체 가입 연회비(APGC,USGA 등)
		건 물 관 리 비	건물안전관리(소방,전기,엘리베이터,미화) 용역비 및 건물관리에 따른 수선비, 소모성 물품 구입,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사 회 보 험 료	임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회사 부담분
		대 손 상 각 비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협회비 등
		무형자산감가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
		잡 비	위의 열거된 계정항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비용
사업외수익		기 타 보 조 금	목적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보조금
		이 자 수 익	투자자산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서 발행되는 예금이자
		외 환 차 익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환부채의 상환 시 발생하는 차이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차이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 수정이익
		회계단위간전입금	다른 회계단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체 거래를 제외)
		잡 이 익	타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이 자 비 용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외 환 차 손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환부채의 상환 시 발생하는 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차손
		유형(재고)자산 폐기 손 실	유형자산(또는 재고자산) 폐기에 따른 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 수정손실
		회계단위간전출금	다른 회계단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체 거래를 제외)
		잡 손 실	타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공익법인[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환입된 금액	
법 인 세 비 용		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추가되는 세액	
당기 운영 이익 (손 실)		당기운영이익(손실)=사업수익-사업비용+사업외수익-사업외비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법인세비용	